

간호사의 역할과 법

박 성 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목 차

- I. 간호법의 필요성
- II.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 III. 간호업무의 법적문제

I. 간호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향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의 자연증가, 인구의 노령화, 도시집중화 등과 함께 보건의료전달 체계내의 의료비 상승, 의료시설의 편재 등 보건의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와같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민의 의료보험을 확대실시한 이후 더욱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되고 의료비가 상승하는 반면 보건의료 수요는 상대적으로 충족되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의료는 의사단독적 행위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의료대상자도 의료에 참여해서 설명, 동의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의료는 과거보다 더욱 전문화, 분업화된 상태에서 의사 혼자서 의료대상자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간호업무는 전통적으로 의료를 보조하는 업무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내적, 외적 전환요구를 받게 되었다.

독자적 간호기능은 간호과정을 통한 직접적인 간호제공과 간호과정을 위한 관리기능을 포함한다. 예를들면 전문직 간호사로서 개별적으로 간호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는 과

정, 즉 간호사정, 간호계획, 수행,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간호팀이 공동으로 간호목표를 성취하도록 하기위한 일련의 간호관리과정, 즉 간호업무에 대한 계획, 조직, 인사관리, 지휘, 통제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 기능이므로 전문적 간호기능을 독자적 간호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법이 단독으로 없기 때문에 간호업무의 범위를 논하기 어렵고 시행규칙에 근거한 간호업무에 근거를 두고 간호업무의 법적 고찰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그 예방을 위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간호교육과정에서는 독자적인 간호기능을 강조하고 학문적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하도록 준비시켜서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실제업무상 이와같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갈등과 좌절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간호업무에서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간호업무에 대한 책임, 의무등을 확인하므로서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II.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1. 의료법상의 간호업무

(1) 환자의 요양상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환자의 병상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조성과 간호, 그리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하는 임무.

(2)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료법 제22조)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요양방법과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외부가 있는 것이다.

(3) 간호기록의 작성 및 보관(의료법 제21조 등 시행규칙 제17조 3항 및 제18조 7호)

간호기록은 다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다.

가) 체온, 맥박, 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투약은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로서 처치방법과 종류가 다양하므로 투약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간호사의 업무라고 해석하기보다 투약과 처치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라)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사가 수행하는 처치와 간호업무는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수행하는 경우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수행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의사의 지시를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의사의 지시를 수행한 업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의사에게 있으나 비독자적인 간호업무라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수행 과정상 간호사의 실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야기된 악결과에 대해서는 간호사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간호업무

(1) 간호사의 정의

간호사는 정부가 인정한 정규 간호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실무 능력을 인정 받아서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2) 간호의 정의

간호는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도와주는 활동이다.

(3) 한국간호사의 윤리강령

간호의 기본 책임은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건강의 회복 및 고통의 경감에 있다.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따라서 간호는 국적이나 인종, 종교, 사상,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호사는 인류의 건강복지의 증진, 간호사업의 발전 및 간호사의 권익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각 간호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한다.

대상자에 대하여

① 간호사는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사회 구현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권리와 공지를 가지고 간호직에 임하며 국가 비상시에 대비한다.

② 간호사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관습을 존중한다.

③ 간호사는 직업상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전문적인 판단없이는 개발하지 않는다.

전문적 업무에 대하여

④ 간호사는 간호업무와 간호교육의 표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그 주역을 담당한다.

⑤ 간호사는 전문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간호활동을 전개하여 간호의 학문적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⑥ 간호사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간호를 제공한다.

⑦ 간호사는 간호사업의 발전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권익을 위하여 조직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 한다.

협동자에 대하여

⑧ 간호사는 법적 권한과 의무를 정확히 알고 타 전문직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⑨ 간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협조한다.

⑩ 간호사는 피간호자가 타인에 의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이상과 같이 간호협회가 정의한 간호업무와 의료법상에 규정된 간호업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법에는 주로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간호업무를 모호하게 규정한데 비해 간호협회가 정의한 간호업무는 그 대상범위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적으로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간호업무로서 해석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업무수행 중 법적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정확히 알고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 간호사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간호업무의 법적문제

1. 투약오류(Medication error)

환자에게 투약할 때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간호사이다.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약사가 조제를 하면 이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은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는 간호사의 투약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한 약도 간호사는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기 때문에 투여하기 전에 약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여 시정할 수 있을 만큼 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정확한 투약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주사약을 투여하는 것은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업무중 주사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며 주사는 많은 부작용과 합병증 및 휴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사사고에 대한 법적평가를 할 때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호사는 주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1) 주사약의 확인 : 처방한 약인지 확인한다.
- 2) 용량의 확인 : 처방한 약의 용량이 적당한 것인지, 적당한 양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3) 주사부위 및 방법의 확인 : 처방 지시된 방법이 적당한 것인지(정맥내, 근육내, 피내 등) 또 그 부위가 적합하지 확인한다.
- 4) 감염 위험성 확인 : 주사기, 주사약, 주사부위 등이 감염우려가 없을 정도로 소독되었는지 확인해야하며 주사약의 혼탁, 점조도의 변화, 착색, 냄새 등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확인한 후 주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간호사로는 불가항력이라 하겠다. 주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주사의 필요성, 가치, 부작용발생시의 대비책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에 대한 것이다.

2. 주사기출상의 과오

주사로 인한 사고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물에 대한 과민성으로 인한 쇼크, 말초신경손상(마비) 및 감염을 들 수 있다. 약물로 인한 과민성 쇼크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사하기 전에 반드시 특이체질여부 또는 민감성 여부에 대한 검사와 과거력을 확인 하므로서 예방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와 함께 의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주사로 인한 말초신경 및 근육의 손상은 주사침이 신경을 찔렸거나 또는 주사액이 신경초에 주입, 침윤 또는 주사액으로 인한 염증, 반흔형성에 의한 유착, 압박 등과 근육내주사로 야기된 출혈, 이에 따르는 무균적 염증 및 근육의 섬유화 등에 의하여 마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주사침이 직접적인 기계적 손상을 준 경우 이차적으로 조직의 반흔 형성으로 마비가 일어나거나 또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주사액의 용제 및 용매가 흡수되기 어려운 종류인 경우 경络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경을 압박하여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말초신경 및 근육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주사시에 전격통 또는 방산통을 호소하고 주사직후 마비감을 느끼게 되는데 주사시에 전격통, 방산통을 호소한 경우 대부분은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근육주사의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서서히 주사하도록 되어 주사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 반응을 살피면서 말초신경이나 근육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주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근육단축증은 근육조직의 손상, 출혈, 괴사, 섬유화 및 무균성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인데 근육주사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어린이의 경우 근 섬유가 섬유화됨으로서 반흔을 남기게 되고 그 선선도가 감소되어 근육의 길이가 전

체적으로 짧아지거나 신축성이 소실되므로서 그 근육에 의해 움직이는 관절의 가동성이 소실되므로서 일어난다.

간호사는 근육주사시 주사부위, 방법, 주사약, 용량을 확인한 후 주사과정에서 출혈여부의 확인, 적절한 속도의 주입, 무균법에 의한 주사과정을 철저히 지키므로서 이와같은 주사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사사고시 법률적 판단사항을 알고 주사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주사의 필요성

주사 아님 치료행위는 없었는가?

다른 치료방법도 있었으나 신속한 치료만을 위해서인가?

응급을 요하기 때문에 주사는 부득이 하였는가?

주사행위를 하였어도 구제를 할 수는 없었으나 1%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주사행위를 한 것인가?

(2) 적정한 약을 사용하였는가?

주사약가운데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택하였는가?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을 사용할 수는 없었는가?

적당한 주사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사용한 것은 아닌가?

달리 주사약을 구할 길은 없었는가?

약의 용량은 적정하였는가?

주사약에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의심하였는가?

또는 이에 대한 주의를 하였는가? 그 분별은 가능하였는가?

(3) 주사기는 적정하였는가?

소독을 했는가?

사용한 소독기에는 이상이 없었는가?

주사시 시주자의 손을 소독하였는가?

(4) 주사행위는 적정하였는가?

주사행위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게을

의한 바는 없는가?

주사시간은 적정하였는가?

주사방법은 적정하였는가?

주사부위는 적정하였는가?

(5) 환자의 기왕력은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환자의 현 증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가?

주사행위에 의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예상하였는가?

시주하려는 주사약에 대한 환자의 기왕력, 가족력을 확인하였는가?

이러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러한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긴박한 것은 아니었는가?

주사시의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였는가?

위 조치를 취하지 못한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6) 부작용이 일어 났을 경우에 대한 조치
부작용이 예상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였는가?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자력으로 이의 해결이 불가능한 때 차선책의 방법을 강구하였는가?

이상의 법률적 판단 사항 중 주사의 필요성, 주사시기, 부작용발생의 대비책에 대한 사항은 의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적절한 주사기, 주사약의 준비 및 주사행위, 주사시 관찰 등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으므로 주사기술상의 과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간호 업무상 과실

간호업무상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간호사의 간호 행위로 인해 상해를 받은 대상자가 법적 소송을 할 경우로서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적 문제는 형법 268조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업무상 과실상해 또는 업무상과실 치사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민사적 문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390조에 근거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해 간호사가 법적증명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간호업무에서 형법, 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윤리적인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은 해당기관이나 간호전문직 단체의 제재대상이 되기도 한다.

간호업무상 과실이 대부분은 민사소송문제로서 근무태반(negligence)이나 배임행위(malpractice)등과 같은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전문직간호사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간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간호사가 주의의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간호사고의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수혈사고

수혈시 수혈대상자와 수혈혈액의 혈액형을 확인하는 일, 적합한 방법으로 수혈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현장에서 간호사가 기계적으로 간호업무를 하다 보면 수혈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맥주사과오보다도 수혈사고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간호사는 수혈시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2) 기계와 스폰지 계산

수술장에서 쓰는 기계와 스폰지는 철저하게

그 수를 세어서 수술 후 복강내에 꺼즈나 기계가 남아있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책임이 간호사에게 있다. 만일 수술후 복강내에 기계나 스폰지가 남아 있게 되어서 법적문제가 될 경우 간호사는 그 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를 예방하기위해 특수처리 스폰지를 쓰거나 고리가 달린 꺼즈를 쓰기도 하는데 간호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와같은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화상

간호업무에서 뜨거운 물주머니나 패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들면 관장용액, 뜨거운 물주머니, 스텀, 전기, 우유병 등을 간호사는 사전에 반드시 그 온도를 확인하고 관찰하며 신중히 업무에 임하므로서 이와같은 화상을 방지해야 한다.

(4) 낙상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아이들, 수술후 환자, 수술전 약물처치를 받은 환자 등은 오리엔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낙상할 우려가 많다. 또 흥분한 환자나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도 떨어지지 않도록 side rail을 미리 부착시켜 주고 만반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바닥이 물, 비누, 왁스 등으로 인해 미끄러운 경우에도 낙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5) 물품 및 기구불량에 의한 부상

간호사가 사용한 물품이나 기구가 불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간호사가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도 사용했을 경우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예를들면 무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기구나 물품이 오염되었을 경우 이를 알고도 간호사가 간호행위에 사용하면 간호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6) 방치로 인한 부상

환자를 홀로있게 했을 경우 부상을 당하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문책을 당하게 된다. 예를들면 얘기방 테이블에서 아기가 떨어졌거나 환자의 눕는차(stretcher car)에서 환자가 혼자 방치되었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

(7) 환자 소유물의 분실 또는 파손

외국의 경우에는 귀중품관리규정이 철저히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관리규정대로 환자가 귀중품을 맡겼는데 이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 책임을 지게되며 특히 특수병동이나 수술장에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호사가 귀중품이나 의치 등을 보관하게 될때 간호사는 이를 잘 보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8) 사전동의의 불이행

의료인은 비록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 예를들면 생검이나 수술, 부검, 수혈 등을 환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겨우 폭행(assault)으로 인정되어 법적문제가 될 수 있다. 간호사도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수행할 경우 간호사가 간호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같은 사전동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간호행위가 많아질수록 더욱 빈번해 질것으로 사려되므로 간호법의 제정과 함께 간호의 독자적 행위에 대한 기준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